



##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이민 사실 자료

1. 호주 직장 법률은 해외 출신 노동자를 포함하여 호주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기본적인 보호 및 권리를 제공합니다.

## 해외 노동자들을 위한 이민 사실 자료

2. 해외 출신 노동자는 모두 노동 권리가 있는 유효한 호주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. 노동 권리가 있는 임시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, 학생 비자 및 서브클래스 457 비자를 포함합니다. 여러분은 [www.immi.gov.au](http://www.immi.gov.au)에서 자신의 노동 및 비자 권리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.
3. 고용주들은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점검할 책임이 있으며 노동자의 여권 혹은 기타 신원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고용주들이 여러분의 노동 권리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4. 고용주들이 비자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. 이민시민국 (DIAC)에서만 비자를 교부, 거절 혹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. DIAC는 여러분의 후원자를 변경하는 방법 혹은 영주권 신청 방법을 포함하여 비자 선택,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5. 서브클래스 457 비자 소지자를 위해, 후원 고용주는:
  - 동일한 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노동자에 비해 최소한 동일한 급료 및 근무조건을 해외 출신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
  - 승인된 기술 직업에서의 해외 출신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
  - 해외 출신 노동자는 다른 고용주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된다

-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
  - 여러분 혹은 DIAC가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해외 노동자를 위해 왕복 항공료를 지불해야 한다
  - 노동자 본인의 허가 없이는 노동자의 급료에서 공제를 해서는 아니된다 (세금은 제외).
6. 여러분은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 이민 법무사 (Migration Agent)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민 법무사를 이용하기로 결정할 경우, 그 법무사가 이민 법무사 등록청 (MARA)에 등록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## 더 자세한 정보

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 
[www.immi.gov.au](http://www.immi.gov.au) 혹은 131 881.

Unions Australia  
[www.unionsaustralia.com.au](http://www.unionsaustralia.com.au) 혹은 1300 486 466.

Fair Work Australia  
[www.fairwork.gov.au](http://www.fairwork.gov.au) 혹은 13 13 94.

Office of the MARA  
[www.mara.gov.au](http://www.mara.gov.au) 혹은 1300 22 62 72

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정보를 원하시면 번역통역 서비스에 131 450으로 전화하십시오.